

2008년도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위치 : 속초시 교동, 조양동 일원
- 면적 : 334천m²(101천평)
- 사업비 : 75,686백만원
 - 계 속 비 : 73,557백만원(공사비 : 43,981백만원, 보상비 : 27,761백만원, 감리비 : 1,815백만원)
 - 부 대 비 : 2,129백만원
- 사업기간 : 1993. 12. 30 ~ 2001. 12. 31(8개년)

○ 공사 개요

구 분	총 사 업 량	2008년도 계획
호매연상하포교통조가 안립약지수장신로 공공수공 사사리도도사량기경등	L = 1,151m V = 1,492천m ³ A = 169천m ² L = 8,122m L = 16,165m 1,042a 2개소 4,883m 1식 297개	청초호유원지 분양 완료

□ 인력관리계획

구 분	당 년 도	전 년 도	증 감	비 고
계	2	2	-	
· 일 반 직	2	2	-	
· 별 정 직	-	-		
· 기 능 직	-	-		
· 기 타 보 수 직	-	-		
· 고 용 직	-	-		
· 일 용 직	-	-		

1. 예 산 총 칙

제 1 조 (총 칙) 2008년도 속초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2 조 (업무예정량)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가. 연 간 총 생 산 량

- | | |
|-------------|----------------------------|
| ○ 택 지 조 성 | 천m ² (천평) |
| ○ 공단용지 조성 | 천m ² (천평) |
| ○ 유 원 지 조 성 | 334천m ² (101천평) |
| ○ 주 택 건 립 | 가구 |

나. 연 간 공 급 면 적

- | | |
|-------------|-----------------------|
| ○ 택 지 조 성 | 천m ² (천평) |
| ○ 공단용지 조성 | 천m ² (천평) |
| ○ 유 원 지 조 성 | 천m ² (천평) |
| ○ 주 택 건 립 | 가구 |

제 3 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

입

제 1 관	공영개발사업수익	2,500,000	천원
제 1 항	영 업 수 익	2,500,000	천원
제 2 항	영업외수익		천원
제 3 항	특 별 이 익		천원

지

출

제 1 관	공영개발사업비용	1,320,760	천원
제 1 항	영 업 비 용	20,760	천원
제 2 항	영업외비용		천원
제 3 항	특 별 손 실	1,300,000	천원
제 4 항	예 비 비		천원

제 4 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수입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액금액 1,329,240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유보자금 1,329,240천원, 이월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천원 및 용지사업미수금 천원으로 보전 하는 것으로 한다.

수

입

제 1 관	자 본 적 수 입		천원
-------	-----------	--	----

제 1 항	고정자산 매각수입	천원
제 2 항	투자 및 기타자산수입	천원
제 3 항	유동부채수입	천원
제 4 항	고정부채수입	천원
제 5 항	잉여금수입	천원
제 6 항	기타자본적수입	천원

지		출
제 1 관	자 본 적 지 출	1,329,240 천원
제 1 항	재 고 자 산	40,000 천원
제 2 항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천원
제 3 항	가동설비자산	천원
제 4 항	비가동 설비자산	천원
제 5 항	이 연 자 산	천원
제 6 항	투자 및 기타자산	천원
제 7 항	유동부채 상환	천원
제 8 항	고정부채 상환	천원
제 9 항	기타 자본적지출	천원
제 10항	예 비 비	1,289,240천원

제 5 조 (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	항	사 업 명	총 액	년 도	비 고
	" 해	당	없	음 "	

제 6 조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	항	기	간	한	도	액
	" 해	당	없	음		"

제 7 조 (지방채)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	채	목	적	한	도	액	기	채	방	법	이자율	상	환	방	법
				"	해		당		없			음			"

제 8 조 (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예산전용금지과목)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1. 급 여 천원
2. 판, 정 보 비 천원

제 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공영개발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천원이다.

제 11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월이익잉여금 천원과 당년도 예정이익잉여금 천원을 포함하여 총 천원 중 천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월결손보조금 천원
2. 이익적립금 천원
3. 감채적립금 천원
4. 건설개량적립금 천원
5. 납 부 금 천원

제 12조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붙임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와 같다)

제 13조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붙임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와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명 칭	수 량	금 액
1. 취득 자산 2. 처분 자산	" 해	당	없	음 "

제 14조 (회전기금)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2007. 11 .

속 초 시 장 채 용 생

2. 2008년도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수입계(A)	2,500	수입계(A')	0	수입계(A'')	2,650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2,500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전년도미수금	2,500 150
지출계(B)	1,321	지출계(B')	40	지출계(B'')	2,650
영업비용 특별손실	21 1,300	재고자산	40	영업비용 특별손실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	21 1,300 40 1,289
차인(A-B)	1,179	차인(A'-B')	△40	차인(A''-B'')	0